

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을 계기로 이혼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분할과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여성신문은 관련 판례를 통해 여성의 재산권에 대해 살펴본다.

전업주부, 가사도우미 고용해도 남편 주식 분할 받는다

〈사례〉

남편이 준 생활비로 가사도우미 썼다면?
남편에게 월 500만원 생활비 받고 가사도우미 고용한 전업주부 A씨, 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소송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·상속한 주식·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, 혼인지속기간·파탄책임 등 관건

전업주부가 남편이 준 생활비로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를 고용해 도움을 받았다면, 이혼할 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. 우리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혼인지속기간,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, 나이, 직업, 경제력 등을 참작한다. 부부 한쪽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고, 생활비를 받아서 보조인을 고용해 살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. 최근에는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40%까지 인정되고 있다. 그러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은 지금까지의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 흐름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나왔다.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“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

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.”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결혼 20년차인 전업주부 A씨는 남편 B씨의 폭력적 성향을 견디다 낸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. 남편 B씨는 신혼 때부터 화가 나면 식탁 위에 있는 숟가락이나 그릇을 던지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. 말다툼 끝에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일도 있었다. B씨는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못마땅해 해 A씨는 경제활동도 그만뒀야 했다.

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충분한 생활비를 받아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를 고용했지만, 법원은 A씨가 20년 이상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남편이 재산을 취득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. 이에 따라 법원은 재산을 A씨 20%, B씨 80%로 분할하고,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25억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 남편 B씨의 재산 대부분은 부친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은 주식과 부동산이었다. ‘특유재산’에 해당한다. B씨는 이 재산을 바탕으로 임대업 회사를 운영해왔다.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일컫는다.

(출처/여성신문)